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4월 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후생복지 제도 현행화 및 불분명한 용어·표현 재정비로 조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조례와 중복적인 시행규칙을 조례로 통합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범위 현행화(안 제6조)
-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범위 현행화(안 제6조)
-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및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용어·표현 재정비(안 제7조 및 제9조)
-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 신설(안 제7조)
- 시행규칙 제4조(위원회의 운영 등)를 조례에 신설·통합하여 위원회 조항 재정비(안 제9조~11조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
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4. 2. 15. ~ 3. 6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: 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정은 (☎2133-5771)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건·휴양·안전후생”을 “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,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선택적복지제도 설계·운영시”를 “선택적 복지제도 설계·운영 시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휴직중”을 “휴직 중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파견중”을 “파견 중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이하“ 위원회“”를 “이하 “위원회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무원에”를 “소속공무원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노력 하여야”를 “노력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직원후생복지”를 “소속공무원 후생복지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”를 “예산의 범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”을 “휴게실·구내식당·매

점·카페·자동판매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무실·치과진료실·체력단련실”을 “부속 의료기관·체력단련실·심리상담센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등의 확보 운영”을 “등”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직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시청매점”을 “매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우수·효행공무원”을 “우수·효행 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직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직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직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“소속공무원”으로, “출산 직원”을 “출산한 소속공무원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중 “소속 공무원”을 각각 “소속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, 관리, 수리 등

나. 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

15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

제8조의 제목 “(후생복지심의위원회)”를 “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 을”을 “운영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제6조에서”를 “제6조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7조에서”를 “제7조

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안전”을 “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,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
2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
4. 「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

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

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중전의 제10조)제1항 중 “후생복지사업의 대행”을 “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"후생복지제도"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<u>보건·휴양·안전후생</u> 등에 관한 복지제도·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.</p> <p>3. "선택적 복지제도"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<u>범위</u>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4. "복지포인트"란 <u>선택적복지제도 설계·운영시</u>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(생 략)</p> <p>② <u>시장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질병·육아·가사 휴직을 제외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</u> ----- -----</p> <p>3. ----- <u>소속공무원</u>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 -----</p> <p>4. ----- <u>선택적 복지제도 설계·운영 시</u> ----- -----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</p>

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

2. 국외에 과건중인 공무원

3. (생략)

4.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
후생복지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
거쳐 정하는 사람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근무
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
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
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
수 있다.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

① (생략)

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
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
력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직원후생복지와 관련
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
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
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시장

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
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
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
게실·구내식당·매점

----- 휴직 중-----

2. ---- 과건 중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이
하 "위원회"-----

③ -----

----- 소속공무원
에 -----
-----.

제4조(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노
력하여야 ---.

③ ---- 소속공무원 후생복지-

-----.

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---

-- 예산의 범위-----

-----.

1. ----- 휴
게실·구내식당·매점·카페·자

가. 직원 후생복지용 아파트
의 임대 및 관리

나. 주택 전세금의 용자

8.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
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

9.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(설,
추석) 상품권 제공 및 2자녀
이상 출산직원 지원 등

10.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
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
램 운영

11.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
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
리프로그램 운영

12. 소속 공무원 중 공로연수자
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
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

13.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
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
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
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

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
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
지원

<신 설>

가.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
대, 관리, 수리 등

나. 주택 임차보증금의 용자
및 이자 지원 등

8. -----
소속공무원-----

9. 소속공무원-----

--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---

10. 소속공무원-----

11. 소속공무원-----

12. 소속공무원 -----

13. 소속공무원-----

14. 소속공무원 -----

15.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

중 지원

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 시
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
영 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
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
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심의한다.

1. (생 략)
2. 제6조에서 다른 후생복지시
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제7조에서 다른 후생복지사
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
안건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
12명 이내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
는 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
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
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
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
2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
임직원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

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

운영을 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제6조에 -----

3. 제7조에 -----

4. -----

사항

<삭 제>

<삭 제>

하는 사람

4. 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
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
조례」 및 그 밖에 관계법령
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
에서 추천하는 공무원

⑤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
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
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
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
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
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
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
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
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.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
장”이라 한다)은 후생업무를 주
관하는 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
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
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
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
촉한다.

1.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

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
및 관련 전문가

2.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
임직원

3.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
하는 사람

4. 「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
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
례」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
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
추천하는 공무원

④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
으로 하되, 두 차례까지만 연임
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
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
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
관한 조례」 제8조의2와 제9조
에 따른다.

제10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
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
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
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
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
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

<신 설>

<신 설>

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,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

제9조 (생략)

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3조(운영의 위탁 등) ① -----

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·표현·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임

4. 작성자

행정국 인력개발과 오정은, 02-2133-5771